

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(안)

검토보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6월 28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6월 28일

3. 개정이유

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(1992. 7. 1 대통령령 제13684호)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, 도시계획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코자 하는것임.

4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중 "위원장, 부위원장"을 두고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"를 "위원장, 부위원장"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"개정
- 위원의 구성중 도의회 의원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, 위원중 공무원의 인원수 제한 및 위촉자를 "부지사"에서 "도지사"로 개정
-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조항 신설
- 도시과장은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으로 변경

5. 검토 의견

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(1992. 7. 1)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, 도시계획의 신중한 검토와 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설치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코자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, 동 조례는 '93. 3. 6. 충청북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'93. 3. 10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동년 3. 11 지사에게 이송한바, 본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동년 3. 25 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으나, 동년 7. 13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여 이송한 바: 도지사는 동년 7. 26 대법원에 동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하여 '94. 5. 10 대법원으로부터 재의결한 동 조례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 문제 조항은 개정 제출된 제6조 제3항 "위원은 도의회의원 및 도의 관계 실·국·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,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" 고 규정한 부분중 도의회의원을 삭제 의결한 부분과, 제13조 "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" 고 규정한 부분을 도의회의장에게도 보고토록 의결한 부분입니다. 그러므로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구성에 참여함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본 개정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첨부 : 1.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문 1부.